

제476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명	재적이사	8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일시: 2024년 6월 20일(목) 15:00 ~ 16:00 (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6월 10일)
2. 장소: 본 법인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명	박언표, 김상권, 서의택, 안진환, 윤성복, 정주철, 하선규	
	감사 2명	정 일, 황성철	
불참 임원	이사 1명	강신혁	
	감사 0명		

4. 안건

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나. 교원 임용의 건

- . 신라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 신라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다. 규정 개정의 건

- .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라.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의 건

- . 부산시 교육청 인성영어수학캠프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마. 보통재산 폐기의 건

-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기계기구) 폐기에 관한 사항

바. 기타사항

- . 부산형 대학원 대학 설립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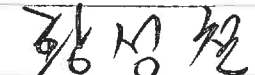
5. 회의내용

의장은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재적이사 8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제476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접수하다.

		
---	---	---

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4.01.01.~2024.12.31.(어린이집 2024.03.01.~2025.02.28.)

(단위 : 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① 사직 종합 사회 복지관	사업수입	351,023	345,024	-5,999	-1.7	사무비	963,563	988,057	24,494	2.5
	보조금수입	2,205,467	2,288,112	82,645	3.7	재산조성비	42,985	84,818	41,833	97.3
	후원금수입	146,329	386,199	239,870	163.9	사업비	1,809,952	2,089,392	279,440	15.4
	전입금	10,000	11,500	1,500	15.0	잡지출	100	100	0	0.0
	이월금	181,073	233,815	52,742	29.1	예비비및기타	101,792	153,877	52,085	51.2
	접수입	24,500	51,594	27,094	110.6					
	소 계	2,918,392	3,316,244	397,852	13.6	소 계	2,918,392	3,316,244	397,852	13.6
②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	사업수입	27,120	24,960	-2,160	-8.0	사무비	179,799	187,457	7,658	4.3
	보조금수입	163,851	186,858	23,007	14.0	재산조성비	2,946	12,963	10,017	340.0
	후원금수입	4,130	13,920	9,790	237.0	사업비	26,760	41,300	14,540	54.3
	이월금	21,370	22,926	1,556	7.3	예비비및기타	11,007	10,985	-22	-0.2
	접수입	4,041	4,041	0	0.0					
	소 계	220,512	252,705	32,193	14.6	소 계	220,512	252,705	32,193	14.6
③ 노인 복지 센터	보조금수입	1,175,242	1,191,515	16,273	1.4	사무비	155,762	157,803	2,041	1.3
	후원금수입	7,500	8,125	625	8.3	재산조성비	960	1,140	180	18.8
	전입금	100	100	0	0.0	사업비	1,038,729	1,056,772	18,043	1.7
	이월금	6,740	10,513	3,773	56.0	잡지출	100	100	0	0.0
	접수입	14,270	15,950	1,680	11.8	예비비및기타	8,301	10,388	2,087	25.1
	소 계	1,203,852	1,226,203	22,351	1.9	소 계	1,203,852	1,226,203	22,351	1.9
④ 동래구 가족 센터	사업수입	2,340,699	2,340,357	-342	-0.0	사무비	541,338	544,331	2,993	0.6
	보조금수입	2,417,569	2,438,012	20,443	0.8	재산조성비	7,500	17,500	10,000	133.3
	후원금수입	30,020	33,500	3,480	11.6	사업비	4,250,241	4,268,526	18,285	0.4
	이월금	194,062	203,979	9,917	5.1	예비비및기타	209,826	212,046	2,220	1.1
	접수입	26,555	26,555	0	0.0					
	소 계	5,008,905	5,042,403	33,498	0.7	소 계	5,008,905	5,042,403	33,498	0.7

187 안표 김상권 황성철

구분	세입					세출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⑤ 신라 직업 재활 시설	입소자부담금	7,390	7,794	404	5.5	사무비	336,453	340,481	4,028	1.2
	사업수입	83,200	83,200	0	0.0	재산조성비	1,500	7,500	6,000	400.0
	보조금수입	325,166	345,021	19,855	6.1	사업비	121,432	140,922	19,490	16.1
	후원금수입	4,950	16,460	11,510	232.5	예비비및기타	33,804	37,978	4,174	12.3
	이월금	45,209	47,132	1,923	4.3					
	접수입	27,274	27,274	0	0.0					
	소 계	493,189	526,881	33,692	6.8	소 계	493,189	526,881	33,692	6.8
⑥ 사회 복지관 여권 이집	보육료	203,840	195,992	-7,848	-3.9	인건비	361,796	343,656	-18,140	-5.0
	수익자부담수입	43,870	47,451	3,581	8.2	운영비	36,453	42,833	6,380	17.5
	보조금및지원금	258,313	252,667	-5,646	-2.2	보육활동비	75,124	79,924	4,800	6.4
	전입금	2,712	2,364	-348	-12.8	수익자부담경비	43,870	47,451	3,581	8.2
	과년도수입	342	32	-310	-90.6	상환반환	800	800	0	0.0
	접수입	210	210	0	0.0	재산조성비	16,000	17,000	1,000	6.3
	전년도이월액	31,256	39,448	8,192	26.2	잡지출	500	500	0	0.0
	소 계	540,543	538,164	-2,379	-0.4	예비비	6,000	6,000	0	0.0
합 계	10,385,393	10,902,600	517,207	5.0	합 계	10,385,393	10,902,600	517,207	5.0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4.01.01.~2024.12.31.

(단위 : 천원)

구분	세입					세출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① 일시 청소년 센터 (고정형)	보조금수입	621,685	626,558	4,873	0.8	사무비	542,485	541,858	-627	-0.1
	후원금수입	0	0	0	0.0	사업비	117,200	122,700	5,500	4.7
	수익사업	1,000	1,000	0	0.0	수익사업	2,104	2,104	0	0.0
	이월금	39,107	39,107	0	0.0	이월금	3	3	0	0.0
	소 계	661,792	666,665	4,873	0.7	소 계	661,792	666,665	4,873	0.7

박영준 개성권 황성철

구분	세입					세출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② 일시 청소년 쉼터 (이동형)	보조금수입	454,446	467,694	13,248	2.9	사무비	391,021	392,194	1,173	0.3
	후원금수입	0	8,000	8,000	100.0	사업비	63,425	93,500	30,075	47.4
	수익사업	1,600	2,093	493	30.8	수익사업	1,600	2,354	754	47.1
	이월금	0	10,261	10,261	100.0					
	소 계	456,046	488,048	32,002	7.0	소 계	456,046	488,048	32,002	7.0
③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조금수입	573,469	590,460	16,991	3.0	사무비	466,429	469,920	3,491	0.7
	전입금	0	1,000	1,000	100.0	사업비	126,553	139,958	13,405	10.6
	이월금	19,513	19,449	-64	-0.3	잡지출	0	1,000	1,000	100.0
						수익사업	0	31	31	100.0
	소 계	592,982	610,909	17,927	3.0	소 계	592,982	610,909	17,927	3.0
④ 청소년 자립 지원관 (혼합형)	보조금수입	386,178	400,512	14,334	3.7	사무비	316,608	320,392	3,784	1.2
	후원금수입	0	14,412	14,412	100.0	사업비	70,819	95,969	25,150	35.5
	수익사업	0	0	0	0.0	수익사업	9	10	1	11.1
	이월금	1,277	1,466	189	14.8	이월금	19	19	0	0.0
	소 계	387,455	416,390	28,935	7.5	소 계	387,455	416,390	28,935	7.5
⑤ 학교폭력 예방회복 조정센터	보조금수입	514,349	514,349	0	0.0	학교폭력예방사업	514,349	514,349	0	0.0
	후원금수입	0	16,159	16,159	100.0	후원금사업	0	16,159	16,159	100.0
	특화사업	65,000	65,000	0	0.0	특화사업	65,000	65,000	0	0.0
	지정사업	19,860	19,560	-300	-1.5	수익사업	260	260	0	0.0
	이월금	5,476	5,176	-300	-5.5	지정사업	25,028	24,426	-602	-2.4
						이월금	48	50	2	4.2
	소 계	604,685	620,244	15,559	2.6	소 계	604,685	620,244	15,559	2.6
⑥ 청소년 성문화 센터	보조금수입	171,192	171,192	0	0.0	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171,192	171,192	0	0.0
	수익사업	90,546	76,577	-13,969	-15.4	수익사업	90,546	90,546	0	0.0
	집수입	0	0	0	0.0	잡지출	0	0	0	0.0
	이월금	0	13,969	13,969	100.0	이월금	0	0	0	0.0
	소 계	261,738	261,738	0	0.0	소 계	261,738	261,738	0	0.0
⑦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보조금수입	137,264	137,264	0	0.0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운영	137,264	137,264	0	0.0
	집수입	0	0	0	0.0	수익사업	0	0	0	0.0
	이월금	0	0	0	0.0	잡지출	0	0	0	0.0
	소 계	137,264	137,264	0	0.0	소 계	137,264	137,264	0	0.0
합 계	3,101,962	3,201,258	99,296	3.2	합 계	3,101,962	3,201,258	99,296	3.2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의장은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중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배부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황성철 감사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백인환 강성철 황성철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강서구진로교육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회계기간 2024.01.01.~2024.12.31.

(단위 : 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관	2024년 본예산(A)	2024년 1차추경예산(B)	증감 (B-A)	증감율 (%)
강서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보조금수입	293,000	290,000	-3,000	-1.0	사무비	174,000	174,500	500	0.3
	전입금	0	500	500	100.0	사업비	119,000	116,000	-3,000	-2.5
	잡수입	30	30	0	0.0	이월금	30	30	0	0.0
	이월금	15	10,494	10,479	69,860.0	반환금	15	10,494	10,479	69,860.0
합 계		293,045	301,024	7,979	2.7	합 계	293,045	301,024	7,979	2.7

나. 교원 임용의 건

• 신라대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의장은 교원 임용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신라대학교 교육지원처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 제청한 교원과 그 중 전임교원(5명 재임용, 1명 조건부 재임용 제청), 교육전담교원(21명 재임용, 1명 휴직 및 복직, 1명 면직 철회), 산학협력중점교원(5명 재임용) 및 연구전담교원(4명 재임용), 명예교수(1명 면직)의 임용 사항을 설명하고 조건부로 재임용 제청된 교원은 기한 내에 '조건부 재임용 조건'으로 명시된 연구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취소한다는 사항을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조건부 재임용을 포함한 교원 임용의 건은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임 용 사 항				비 고
구 분			인원(명)	
전임교원	정년트랙	재임용	6	1명 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21	
교육전담교원	비정년트랙	휴직 및 복직	1	* 휴직: '24.06.01.~6.30 * 복직: '24.07.01.
		면직 철회	1	재임용일: 2024.03.01
산학협력중점교원	비정년트랙	재임용	5	
연구전담교원	비정년트랙	재임용	4	
명예교수		의원면직	1	
계			39	

박연희 개성권 황성철

● **신라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의장은 교원 임용의 건 중 신라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중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사 양다교 선생과
 지리 교사 한문수 선생이 신라중학교-5611호(2024.06.10)로 2024년 8월 31일자 면직(정
 년퇴직) 제청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사 상호 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신라중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고 면직과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임을 말하다.

다. 규정 개정의 건

-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기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의장은 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규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규정 개정의 건은 【별첨 1】 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이해보증보험증권 가입의 건

- 부산시 교육청 인성영어수학캠프사업 이해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의장은 이해보증보험증권 가입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미리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신라대학교가 부산시 교육청 인성영어수학캠
 프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어 2024년 7월 22일부터 2024년 8월 9일까지, 3주간 부산시
 소재 중학교 1학년 76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인성함양, 대학특화 등 수업을 진행하게 되
 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이해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참석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사 상호간 의견 교환 끝에 참석 이사 전원이 원안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부산시 교육청 인성영어수학캠
 프사업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발급과 향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계약 및 계약내
 용 변경(증액, 감액, 연장, 단축 등)에 따른 보증보험 계약에 대하여도 본 이사회 회의특으
 로 그 의결 및 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이해보증보험 가입내용**

과 정 명	연수기간	약정기간	사업규모
인성영어 수학캠프	2024.07.22.(월)~08.09(금)	2023.12.01~2024.09.20	228,000천원 (보험금 277,310원)

박영표 김삼진 홍성진

마. 보통재산 폐기의 건

•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기계기구) 폐기에 관한 사항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을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법인 사무국장은 신라대학교 유형고정자산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2조(대손상각등), 제34조(감가상각)에 의거 내용연수가 초과, 노후화,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기구를 폐기하고자 함을 자세하게 설명하다.
 의장은 상정 안전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이사 정수 8명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보통재산 폐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선언하다.

○ 물품 (기계기구) : 금17,190,000원

연번	물품명	구입단가	불용금액	불용사유	회계구분	구입일	부서명(설치장소)	수량(EA)
1	피아노(그랜드)	5,000,000	5,000,000	노후화로 인한 기능상실	기계 기구	2009.02.24	피아노레슨실(예316)	1
2	피아노, 01	5,690,000	5,690,000			2001.08.24	피아노레슨실(예314)	1
3	그랜드피아노	6,500,000	6,500,000			2005.06.27	피아노레슨실(예317)	1
합계(500만원이상)			17,190,000					3EA

바. 기타사항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법인 사무국장은 부산형 대학원 대학 설립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확정된 사안이 없어 추후 이사회 안전으로 상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부산형 대학원 대학 설립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의장은 기타 논의할 사항이 있는지 묻고,
 참석 이사 상호간에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

6. 간서명 임원선임

의장은 금일 이사회 참석 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 할 임원으로 3인을 추천 요청하고, 하선규 이사가 박언표 이사장, 김상권 이사, 황성철 감사 3인을 추천하다.
 이사 정수 8명 중 참석 이사 7명 전원이 찬성하므로,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박언표 이사장, 김상권 이사, 황성철 감사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

7. 폐회선언

안전 처리가 다 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박 언 표	김 상 권	황 성 철
-------	-------	-------

학교법인 박영학원 이사장 박언표 (서명) **박언표**
 이 사 김상권 (서명) **김상권**
 이 사 서의택 (서명) **서의택**
 이 사 안진환 (서명) **안진환**
 이 사 윤성복 (서명) **윤성복**
 이 사 정주철 (서명) **정주철**
 이 사 하선규 (서명) **하선규**
 감 사 정 일 (서명) **정일**
 감 사 황성철 (서명) **황성철**

박언표	김상권	황성철
------------	------------	------------

【별첨1】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복무규정 제3장 휴가 제17조(경조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복무규정 제3장 휴가 제17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내 인사관리 개정에 따라 관련 경조휴가 일수를 수정하여 개정함. 또한, 동일 업무가이드 내 육아시간 사용 개월 수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p>②~⑥ (생략)</p> <p>제17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본 법인에 입사하여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근속기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 10년미만</th> <th style="width: 15%;">10년이상 20년미만</th> <th style="width: 15%;">20년이상 30년미만</th> <th style="width: 15%;">30년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제17조의7(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u>일</u>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신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5)</td> </tr> <tr> <td>입양</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사망</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p>②~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근속기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 10년미만</th> <th style="width: 15%;">10년이상 20년미만</th> <th style="width: 15%;">20년이상 30년미만</th> <th style="width: 15%;">30년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7(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u>일</u>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 부칙 신설																																																													

박인준 감상권 황성현

현 행	개 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운영위원회</p> <p>제20조(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5. 해당 시·군·구 소속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담당 주무관</u>) 6.~8. (생략) ③ (생략)</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적용 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복무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휴가</p> <p>제18조(경조휴가)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운영위원회</p> <p>제20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해당 시·군·구 소속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삭제</u>) 6.~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적용 기준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복무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휴가</p> <p>제18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운영위원회 구성 중 담당공무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내부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으로 인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 내용 개정 -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개정에 따른 휴가 일수 수정</p>

박연표

가상인

황성권

현행			개정			비고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자녀	5 1	결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본인	20	입양	(현행과 같음)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개월수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제19조의4(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제20조(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생략)			제20조(장기근속 유급휴가) ①(현행과 같음)			
근속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조정)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박인표 김성진 황서현

현행	개정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보수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당 및 업무추진비</p> <p>제13조의2(성과급) 매년 <u>장애인주간보호센터</u>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보수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수당 및 업무추진비</p> <p>제13조의2(성과급) 매년 <u>시설</u>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여비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여비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문서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문서의 정리,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표</p>	<p style="text-align: center;">문서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센터</u>(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문서의 정리,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와 표</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박인표 김성진 함성진

현 행	개 정	비 고
<p>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재무회계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u>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 4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재무회계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u>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 4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관리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u>센터 시설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관리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u>센터 시설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차량관리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u>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차량관리규정 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u>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p>	<p>-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p>

백 언표 김상진 황성권

현행	개정	비고
<p>소유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신설)</p> <p>종사자 인권보호 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보호</u>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신설)</p>	<p>소유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종사자 인권보호 규정 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 본 규정은 사직장애인주간 <u>이용</u>센터(이하“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p> <p><u>부칙</u>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큰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부칙 신설</p> <p>-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자구수정)</p> <p>-부칙 신설</p>

사직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p>복무규정 제3장 휴가</p> <p>제18조(경조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p>	<p>복무규정 제3장 휴가</p> <p>제18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 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안·시설 업무가이드 반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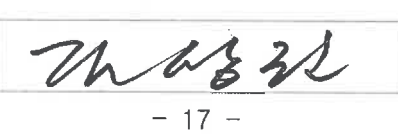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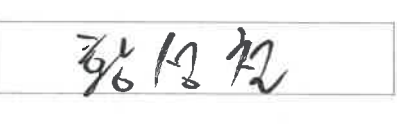
백인호	김성민	황성현
-----	-----	-----

현행			개정			비고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현행과 같음)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15)																				
입양	본인	20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현행과 같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p>제19조의4(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들 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제19조의4(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들봄, 육아 등을 위한 1일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제20조(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본 법인에 입사하여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근속기간</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h>20년이상 30년미만</th> <th>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일수</td> <td>5일</td> <td>10일</td> <td>15일</td> <td>15일</td> </tr> </tbody> </table>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5일	15일	<p>제20조(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근속기간</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h>20년이상 30년미만</th> <th>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일수</td> <td>5일</td> <td>10일</td> <td>25일</td> <td>25일</td> </tr> </tbody> </table>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5일	15일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부칙 신설																						

		
---	---	---

동래구가족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복무규정 제3장 휴가</p> <p>제17조(경조휴가) ①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자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body> </table> <p>② ~ ⑥ (생략)</p> <p>제17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근속 기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10년미만</th> <th style="width: 15%;">10년이상-20년미만</th> <th style="width: 15%;">20년이상-30년미만</th> <th style="width: 15%;">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r> </tbody> </table> <p>② ~ ③ (생략)</p> <p>제17조의7(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신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 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p>복무규정 제3장 휴가</p> <p>제17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대상</th> <th style="width: 20%;">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 (15)</td> </tr> <tr> <td>출산</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입양</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근속 기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10년미만</th> <th style="width: 15%;">10년이상-20년미만</th> <th style="width: 15%;">20년이상-30년미만</th> <th style="width: 15%;">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 일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25일</td> </tr> </tbody> </table>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7(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15)	출산	(현행과 같음)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 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p>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 내 인사관리 개정에 따라 관련 경조휴가 일수를 수정하여 개정함. 또한, 동일 업무 가이드 내 육아시간 사용 개월 수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부칙 신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 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15)																																																														
출산	(현행과 같음)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 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	--	---

신라직업재활시설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취업규정 제2장 복 무</p> <p>제38조(경조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0</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② ~ ⑥ (생 략)</p> <p>제38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본법인에 입사하여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속 기간</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h>20년이상 30년미만</th> <th>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 일수</td> <td>5일</td> <td>10일</td> <td>10일</td> <td>10일</td> </tr> </tbody> </table> <p>② (생 략)</p> <p>제38조의8(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p style="text-align: center;">취업규정 제2장 복 무</p> <p>제38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10(15)</td> </tr> <tr> <td>입양</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사망</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body> </table>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3(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근속 기간</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h>20년이상 30년미만</th> <th>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휴가 일수</td> <td>5일</td> <td>10일</td> <td>25일</td> <td>25일</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8(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p>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p>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개정에 따라 경조휴가, 장기 근속 유급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개월 수가 명시됨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함</p>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근속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현행과 같음)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근속 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휴가 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	---	---

현행	개정	비고
(신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사직복지관 어린이집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p>제4장 복무관리 제2장 휴일·휴가</p> <p>제76조(경조휴가) ① 보육교직원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본인</td> <td>5</td> </tr> <tr> <td>자녀</td> <td>1</td> </tr>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0</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20</td> </tr> <tr> <td rowspan="5">사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td> <td>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② (생략)</p> <p>제80조(육아시간) 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보육교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이나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로 처리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p>제4장 복무관리 제2장 휴일·휴가</p> <p>제76조(경조휴가) ①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10 (15)</td> </tr> <tr> <td>입양</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 rowspan="2">사망</td> <td>(현행과 같음)</td> <td></td> </tr> <tr> <td></td> <td></td> </tr> </tbody>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p>제80조(육아시간) ①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보육교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이나 육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단,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로 처리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p>-2024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내 인사관리 개정에 따라 관련 경조휴가 일수를 수정하여 개정함. 또한, 동일 업무가이드 내 육아시간 사용 개월 수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p> <p>- 부칙 신설</p>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현행과 같음)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15)																																									
입양	(현행과 같음)																																										
사망	(현행과 같음)																																										

박인표 김성진 황성현

동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운영</p> <p>제10조(직원) ① (생략)</p> <p>② 직원이라 함은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u>기능교사, 경리, 조리사 또는 영양사, 노무기사, 요양보호사</u> 등을 말한다.</p> <p>③ (생략)</p> <p>④ 직원은 <u>기관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u> 임명한다.</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운영</p> <p>제4조의3(채용절차 및 방법) ① (생략)</p> <p>②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지원서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점 <u>100점</u> 만점으로 심사하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선정한다.</p> <p>1~4. (생략)</p> <p>③ 면접전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점 <u>100점</u> 만점으로 심사한 후 점수를 순위로 전환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p> <p>1~2. (생략)</p> <p>3. <u>동료 직원과의 공동 협력</u></p>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운영</p> <p>제10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직원이라 함은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u>사무원, 조리원, 영양사, 관리인, 운전기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u> 등을 말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직원은 <u>기획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u> 임명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인사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조직 및 운영</p> <p>제4조의3(채용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지원서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점 <u>10점</u> 만점으로 심사하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서 5배수 사이로 선정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③ 면접전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총점 <u>10점</u> 만점으로 심사한 후 점수를 순위로 전환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종사자 적합성(업무수행능력, 가치</u></p>	<p>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급여기준 적용 직위 분류에 따라 운영규정 직원 명칭 개정</p> <p>직원의 임명기준을 인사규정 제2장 신규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p> <p>부칙신설</p> <p>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채점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용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 개정</p>

박인표	김상진	황성원
-----	-----	-----

현행	개정	비고
<p>4. <u>지원자 이력사항을 고려한 향후 발전가능성</u></p> <p>제9조(수습기간) ① <u>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직은 예외로 한다.</u></p> <p>② (생략)</p> <p><u>(신설)</u></p> <p>복무규정</p> <p>제3장 휴가</p> <p>제16조(병가) ① 직원이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7조(특별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p>	<p><u>와 철학 등)</u></p> <p>4. <u>기타 면접관의 종합의견을 고려한 향후 발전가능성</u></p> <p>제9조(수습기간) ① <u>(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u>부칙</u></p> <p><u>(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p>복무규정</p> <p>제3장 휴가</p> <p>제16조(병가) ① 직원이 <u>질병 및 기타치료를 사유로 병가를 요청할 경우</u>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u>병원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u>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특별휴가) ① (좌동)</p>	<p>근로자 고용 시 법인 제청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됨에 따라 수습 기간이 없어 관련 규정 개정</p> <p>부칙신설</p> <p>직원의 병가 사용 시 증명기준을 명확하게 개정</p> <p>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에 인사 관리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p>

박연표 김상진 정상진

현행			개정			비고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인사 관리 특별휴가 중 장기근속 유급휴가 일수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자녀	1		자녀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한 번에 들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p>제17조의2(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허가를 얻을 수 있다.</p> <table border="1"> <tr> <th>근속기간</th>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30년 이상</td> </tr> <tr> <th>휴가일수</th> <td>5일</td> <td>10일</td> <td>10일</td> <td>10일</td> </tr> </table> <p>②~③ (생략)</p>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p>제17조의2(장기근속 유급휴가) ① (좌 등)</p> <table border="1"> <tr> <th>근속기간</th>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 <td>30년 이상</td> </tr> <tr> <th>휴가일수</th> <td>5일</td> <td>10일</td> <td>25일</td> <td>25일</td> </tr> </table> <p>②~③ (현행과 같음)</p>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근속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25일	25일																						
<p>제17조의6(육아시간) 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1~2. (생략) ②~③ (생략)</p> <p>(신설)</p>			<p>제17조의6(육아시간) ①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종사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2024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인사 관리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사용 개월 수가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박연토	김상진	장성진
-----	-----	-----

현 행	개 정	비 고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종사자 인권보호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명칭) 본 규정은 동래구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법인에 임용을 제청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한다.</p> <p>제4조(기관의 책무) ① 복지관은 근로자의 인권 및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직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근로자의 협력) 근로자는 스스로</p>	<p>- 규정 신설</p>

백연표 김상권 장성현

현행	개정	비고
	<p>가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 2 장 근로자의 보호조치</u></p> <p>제6조(근로자의 업무) ① 근로자의 업무는 복지관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p> <p>② 복지관장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근로의무면제를 보장한다.</p> <p>제7조(근로자 간 문제 발생) 근로자 간 문제 발생 시 부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를 행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및 제32조(직위해제)에 의거하여 징계한다.</p> <p>제8조(징계사유) 복지관은 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행사 참석, 후원금 납부 등 지급을 남용하여 부당한 업무강요 2. 기관 내 근로자의 따돌림 행위 3.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4. 폭언 및 폭행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p>제9조(징계위원회) ① 복지관의 복지관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p>	

백연돈	개성권	정성현
-----	-----	-----

현행	개정	비고
	<p><u>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u></p> <p><u>③ 복지관장에 대한 경우: 법인이사회 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u></p> <p><u>제10조(징계의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피징계자 및 피해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u></p> <p><u>②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u></p> <p><u>제11조(소명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2조(이용자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이용자와 근로자 간 문제 발생 시 이용자의 일방적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수 있다.</u></p> <p><u>1.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u></p> <p><u>2. 민·형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박인환	김상진	정성현
-----	-----	-----

현행	개정	비고
	<p><u>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u></p> <p><u>③ 복지관장에 대한 경우 법인이사회 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u></p> <p><u>제10조(징계의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피징계자 및 피해자에게 출석통보를 하여야 한다.</u></p> <p><u>② 피징계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심의를 할 수 있다.</u></p> <p><u>제11조(소명의 기회부여)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피징계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12조(이용자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이용자와 근로자 간 문제 발생 시 이용자의 일방적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수 있다.</u></p> <p><u>1.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u></p> <p><u>2. 민·형사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u>박영준</u>	<u>김상진</u>	<u>정승민</u>
------------	------------	------------